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보조금 등 사업비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환경부

관 계 기 관 환경부

내 용

강릉시에서 2013. 5. 27. ◆◆ 한국사무소(소장 J, 이하 "위 단체"라 한다)를 "녹색기후도시 등록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50,000천 원을 교부하는 등 강릉시와 평창군, 경기도, 환경부, 재단법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1] 등에서 [표 1]과 같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위 단체를 보조사업자 또는 연구용역자나 위탁사업자로 각각 선정하고, 계 522,780,000원의 사업비를 교부 또는 지급하였다.

[표 1] ◆◆ 한국사무소의 보조사업 등 현황(2013~2015년)

(단위: 원)

연번	구분	관계 기관	사업명	보조금(용역비, 협약금)	교부(지급)일자 (사업기간)	정산보고일
1	보조사업	강릉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녹색기후도시 등록사업	50,000,000	2013. 5. 27 (2013년)	2014. 1. 10.
2	보조사업	평창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녹색기후도시 등록사업	50,000,000	2013. 5. 29 (2013년)	2014. 1. 10.
3	보조사업	경기도	2014년 경기도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구축사업	150,000,000	2014. 3. 28 (2014년)	2015. 1. 15.
4	연구용역	환경부	지방 생물다양성 전략 활성화 방안 연구	42,780,000	2014. 6. 27 (2014년)	2014. 12. 4.
5	위탁사업	(재)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지방정부과정 운영업무 위수탁사업	230,000,000	2014. 9. 19 (2014~2015년)	2015. 1. 8. ~ 2015. 5. 15.
계			5개 사업	522,780,000		

1)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세계물포럼의 준비 및 개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위원장 K)

자료: 강릉시 등 감사대상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이 건 5개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 등을 살펴보면, 강릉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 조례가, 환경부는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2014. 4. 21. 환경부 훈령 제1097호, 이하 "환경부 연구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재단법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위원장 K)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지방정부과정 운영업무 위·수탁협약」(이하 "위·수탁협약"이라 한다)이 각각 적용된다.

구 「강릉시 보조금 관리 조례」(2014. 12. 31. 조례 제1049호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조 및 제17조, 구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2. 조례 제212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4. 12. 31. 조례 제4807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조조건에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평창군에서는 2013. 5. 29. 위 단체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녹색기후도시 등록사업" 보조금(50,000,000원) 교부결정 통지를 할 때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2]에 관한 내용을 통보하였다.

또한, 환경부 연구관리규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인정금액은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수탁협약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1, 2차연도 사업종료 후(중간 정산)와 협약 종료(2015. 9. 30.) 후(최종 정산)[3]에 각각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그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협약에 위반되게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중지,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계약상대방은 부정당업자로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4]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금 등 사업비를 용도 외로 집행하거나 실제 지급하지도 않은 인건비를 마치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등 사업비를 교부·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한편, 위 단체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표 2]와 같이 수원시로부터 위 단체의 자체사업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은 정책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근직원의 인건비(다른 보조사업의 인건비과 구분되게 이하 "급여"라 한다) 계 762,452,000원을 교부받아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5개 사업

2) 개정된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는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이 있으나, 구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용도 외 사용규정이 없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용도 외 사용금지 명시

3) 2015년 10월 현재 정산 처리 중임

4) 다른 기관의 사업과 달리 용역계약에 해당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의 사업비에서 상근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돌려받아 자체수입으로 처리한 후 다른 사업의 자부담금,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표 2] ◆◆ 한국사무소의 수원시 보조금 교부 등 현황(2012~2015년)

(단위: 원)

사업연도	사업명	보조금액	보조금액 중 급여 집행액	횡령대상 상근직원 급여 지급액		
				기간	성명	금액 (월 평균)
2013	◆◆ 한국사무소 운영 및 사업추진	500,000	265,632	6~12월	L	15,636,000 (2,606,000)
				6~12월	M	13,567,000 (2,265,000)
2014		260,000	246,820	10~12월	J	9,904,000 (3,301,000)
				4~12월	L	20,751,000 (2,594,000)
				4~12월	N	20,373,000 (2,547,000)
2015		260,000	250,000 (계획액)	1~5월	J	17,044,000 (3,409,000)
				1~4월	L	10,775,000 (2,694,000)
				5월	P	2,758,000
	계	1,020,000	762,452			110,828,000

자료: 수원시 및 ◆◆ 한국사무소 제출자료 재구성

1. "녹색기후도시 등록사업"(강릉시·평창군)의 경우

강릉시와 평창군에서는 2013. 5. 27.과 같은 해 5. 29. 각각 위 단체를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50,000,000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단체에서는 [별표 1] "보조금 등 사업비 횡령 명세(강릉시·평창군)"과 같이 2013. 6. 27.부터 같은 해 12. 24. 사이에 상근직원 L과 M에게 지급한 인건비 계 16,382,240원 중 14,574,120원(강릉시·평창군 각각 7,287,060원)을 각각 7차례에 걸쳐 위 단체 명의의 △△ 계좌로 돌려받아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으며, 2014. 1. 10. 강릉시와 평창군에 보조금 정산보고를 할 때에는 L과 M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의 계좌이체 확인증을 증빙서류로 각각 제출하였다.

2. "경기도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구축사업"(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에서는 2014. 3. 28. 위 단체를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3. 28.과 같은 해 9. 30. 계 150,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단체에서는 [별표 2] "보조금 등 사업비 횡령 명세(경기도)"와 같이 2014. 4. 30.부터 같은 해 12. 24. 사이에 상근직원 L과 N에게 지급한 인건비 계 10,582,920원 전액을 각각 9차례에 걸쳐 △△ 계좌로 돌려받고,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O의 경우 2014. 11. 17. 퇴사하였는데도 같은 해 11. 25.부터 같은 해 12. 24. 사이에 계 3,097,440원의 인건비(11월·12월분)를 O의 계좌로 이체한 후 2차례에 걸쳐 계 2,651,130원을 △△ 계좌로 돌려받아 계 13,234,050원을 횡령하였으며, 2015. 1. 15. 경기도에 보조금 정산보고를 할 때에는 L, N, O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의 계좌이체 확인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3. "지방 생물다양성 전략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환경부)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2014. 6. 27. 위 단체를 위 사업의 연구용역자로 선정하고 42,787,000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위 단체에서는 [별표 3] "보조금 등 사업비 횡령 명세(환경부)"와 같이 2014. 7. 25.부터 같은 해 11. 25. 사이에 상근직원 L에게 지급한 인건비 계 5,532,400원 전액을 5차례에 걸쳐 △△ 계좌로 돌려받아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으며, 2014. 12. 4. 환경부에 보조금 정산보고를 할 때에는 L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의 계좌이체 확인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4.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지방정부과정 운영업무 위·수탁사업"[재단법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의 경우

재단법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에서는 2014. 9. 19. 위 단체와 위 위·수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230,000,000원의 협약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위 단체에서는 [별표 4] "보조금 등 사업비 횡령 명세(세계물포럼조직위)"와 같이 2014. 11. 25.부터 2015. 4. 24. 사이에 소장 J와 상근직원 L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총 6차례에 걸쳐 △△ 계좌에 계 29,082,740원을 바로 입금하였다.

그리고 2015. 1. 8.과 같은 해 5. 15. 재단법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에 중간 정산할 때에는 J와 L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계좌이체 확인증을 인건비 지출증빙 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수원시에서 교부한 사업비를 위 사람들에게 급여로 지급한 데 대한 계좌이체 확인증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직 정산하지 않았지만 2015. 5. 26.에도 소장 J와 상근직원 P의 인건비 3,270,530원을 △△에 바로 입금하여 2014. 11. 25.부터 2015. 5. 26. 사이에 계 32,353,280원을 횡령하였다.

위 단체에서는 수원시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로 [표 1]의 5개 사업을 수행한 J 소장, 위 단체의 상근직원 L, M, N 등 4명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과 같이 위 5개 사업의 사업비에서 J, L 등 위 단체의 상근직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계좌 입금한 후 위 단체 명의의 △△ 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계 65,693,860원을 횡령하고, 이 중 12,153,750원을 다른 정책사업의 사업비 등으로 집행[5]([표 3] 참고)하였으며 나머지 53,540,110원

5) 위 단체에서는 2015. 4. 7. 주한영국대사관과 협약을 체결한 "에너지 안전도시 사업"(사업기간: 2015. 4. 1.~2016. 1. 31. 총사업비: 74,333,049원)을 수행하기 위해 같은 해 4. 2. △△에서 35,000,000원을 선집행하는 등 2015. 4. 2.부터 2015. 6. 8. 사이에 계 49,420,600원을 다른 사업의 선집행액, 자부담금 등으로 집행하였는데, 이 중 위 단체에서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회원도시 회비 등이 37,266,854원에 불과(2015. 6. 8. 기준)하여, 일부 회원도시 회비로 집행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나머지 12,153,746원은 횡령한 자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은 위 단체의 인건비 등 운영비, 다른 사업의 자부담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다.

[표 3] ◆◆ 한국사무소의 보조금 횡령 총괄내역 등

(단위: 원)

연번	사업명	불법 조성 자금	불법자금 집행액
1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녹색기후도시 등록사업	7,287,060	12,153,750
2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녹색기후도시 등록사업	7,287,060	
3	2014년 경기도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구축사업	13,234,050	
4	지방 생물다양성 전략 활성화 방안 연구	5,532,400	
5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지방정부과정 운영업무 위·수탁사업	32,353,280	
계	5개 사업	65,693,860	12,153,750

자료: 강릉시 등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1]

보조금 등 사업비 횡령 명세(강릉시 · 평창군)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녹색기후도시 등록사업

(단위: 원)

연번	인건비 지급						횡령		
	수령자	일자	지급내역	금액			일자	금액	수령자
				강릉시	평창군	계			
1	L	2013. 6. 27.	6월 인건비	590,840	590,840	1,181,680	2013. 6. 27.	1,181,680	◆◆ 한국사무소
2		2013. 7. 29.	7월 인건비	584,120	584,120	1,168,240	2013. 7. 29.	1,168,240	
3		2013. 8. 28.	8월 인건비	584,120	584,120	1,168,240	2013. 8. 28.	1,168,240	
4		2013. 9. 26.	9월 인건비	584,120	584,120	1,168,240	2013. 9. 26.	1,168,240	
5		2013. 11. 5.	10월 인건비	584,120	584,120	1,168,240	2013. 11. 6.	1,168,240	
6		2013. 11. 25.	11월 인건비	584,120	584,120	1,168,240	2013. 11. 25	1,168,240	
7		2013. 12. 24	12월 인건비	584,120	584,120	1,168,240	2013. 12. 24.	260,790	
소계				4,095,560	4,095,560	8,191,120	7건	7,283,670	
강릉시							횡령액	3,641,835	
평창군							횡령액	3,641,835	
8	M	2013. 6. 27.	6월 인건비	590,840	590,840	1,181,680	2013. 6. 27.	1,181,680	
9		2013. 7. 29.	7월 인건비	584,120	584,120	1,168,240	2013. 7. 29.	1,168,240	
10		2013. 8. 28.	8월 인건비	584,120	584,120	1,168,240	2013. 8. 28.	1,168,240	
11		2013. 9. 26.	9월 인건비	584,120	584,120	1,168,240	2013. 9. 26.	1,168,240	
12		2013. 11. 5.	10월 인건비	584,120	584,120	1,168,240	2013. 11. 6.	1,168,240	
13		2013. 11. 25.	11월 인건비	584,120	584,120	1,168,240	2013. 11. 25.	1,168,240	
14		2013. 12. 24.	12월 인건비	584,120	584,120	1,168,240	2013. 12. 25.	267,570	
소계				4,095,560	4,095,560	8,191,120	7건	7,290,450	
강릉시							횡령액	3,645,225	
평창군							횡령액	3,645,225	
합계				8,191,120	8,191,120	16,382,240	14건	14,574,120	
강릉시							횡령액	7,287,060	
평창군							횡령액	7,287,060	

자료: 강릉시 등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2]

보조금 등 사업비 횡령 명세(경기도)

□ 2014년 경기도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구축사업

(단위: 원)

연번	수행자	인건비 지급			환영		
		일자	지급내역	금액	일자	금액	수행자
1	L	2014. 4. 30.	4월 인건비	659,640	2014. 4. 30.	659,640	◆◆ 한국사무소
2		2014. 5. 23.	5월 인건비	659,640	2014. 5. 26.	659,640	
3		2014. 6. 25.	6월 인건비	659,640	2014. 6. 26.	659,640	
4		2014. 7. 25.	7월 인건비	659,640	2014. 7. 25.	659,640	
5		2014. 8. 25.	8월 인건비	659,640	2014. 8. 27.	659,640	
6		2014. 9. 25.	9월 인건비	659,640	2014. 9. 26.	659,640	
7		2014. 10. 24.	10월 인건비	659,640	2014. 10. 24.	659,640	
8		2014. 11. 25.	11월 인건비	659,640	2014. 11. 25.	659,640	
9		2014. 12. 24.	12월 인건비	659,640	2014. 12. 24.	659,640	
소계		소계		5,936,760	9건	5,936,760	
10	N	2014. 4. 30.	4월 인건비	516,240	2014. 4. 30.	516,240	
11		2014. 5. 23.	5월 인건비	516,240	2014. 5. 23.	516,240	
12		2014. 6. 25.	6월 인건비	516,240	2014. 7. 8.	516,240	
13		2014. 7. 25.	7월 인건비	516,240	2014. 7. 25.	516,240	
14		2014. 8. 25.	8월 인건비	516,240	2014. 8. 25.	516,240	
15		2014. 9. 25.	9월 인건비	516,240	2014. 9. 25.	516,240	
16		2014. 10. 24.	10월 인건비	516,240	2014. 10. 24.	516,240	
17		2014. 11. 25.	11월 인건비	516,240	2014. 11. 25.	516,240	
18		2014. 12. 24.	12월 인건비	516,240	2014. 12. 24.	516,240	
소계		소계		4,646,160	9건	4,646,160	
19	O	2014. 11. 25.	11월 인건비	1,548,720	2014. 11. 25.	1,102,410	
20		2014. 12. 24.	12월 인건비	1,548,720	2014. 12. 24.	1,548,720	
소계		소계		3,097,440	2건	2,651,130	
합계				13,680,360	20건	13,234,050	

자료: 경기도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3]

보조금 등 사업비 횡령 명세(환경부)

□ 지방 생물다양성 전략 활성화 방안 연구

(단위: 원)

연번	인건비 지급				환영		
	수행자	일자	지급내역	금액	일자	금액	수행자
1	L	2014. 7. 25.	7월 인건비	1,106,480	2014. 7. 25.	1,106,480	◆◆ 한국사무소
2		2014. 8. 25.	8월 인건비	1,106,480	2014. 8. 27.	1,106,480	
3		2014. 9. 25.	9월 인건비	1,106,480	2014. 9. 26.	1,106,480	
4		2014. 10. 24.	10월 인건비	1,106,480	2014. 10. 24.	1,106,480	
5		2014. 11. 25.	11월 인건비	1,106,480	2014. 11. 25.	1,106,480	
합계				5,532,400	5건	5,532,400	

자료: 환경부 제출 자료 재구성

[별표 4]

보조금 등 사업비 횡령 명세(재단법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

□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지방정부과정 운영업무 위·수탁사업

(단위: 원)

연번	인건비 지급						횡령			비고
	일자	지급내역	금액			수령자	일자	금액	수령자	
			J	L (P)	계					
1	2014. 11. 25.	2014년 10월 인건비	3,018,785	2,314,760 (L)	5,333,540		2014. 11. 25.	10,667,080		가업계좌로 이체 후 △△로 입금
2	2014. 11. 25.	2014년 11월 인건비	3,018,785	2,314,760 (L)	5,333,540	◆◆ 한국사무소				
3	2014. 12. 24.	2014년 12월 인건비	3,018,785	2,314,760 (L)	5,333,540		2014. 12. 24.	5,333,540		
4	2015. 1. 23.	2015년 1월 인건비	2,113,150	1,157,380 (L)	3,270,530	-	2015. 1. 23.	3,270,530	◆◆ 한국사무소	보조금 계좌에서 △△로 바로 입금
5	2015. 2. 25.	2015년 2월 인건비	2,113,150	1,157,380 (L)	3,270,530	-	2015. 2. 25.	3,270,530		
6	2015. 3. 25.	2015년 3월 인건비	2,113,150	1,157,380 (L)	3,270,530	-	2015. 3. 25.	3,270,530		
7	2015. 4. 24.	2015년 4월 인건비	2,113,150	1,157,380 (L)	3,270,530	-	2015. 4. 24.	3,270,530		
소계			17,508,955	11,573,800 (L)	29,082,740		6건	29,082,750		
8	2015. 5. 26.	2015년 5월 인건비	2,113,150	1,157,380 (P)	3,270,530	-	2015. 5. 26.	3,270,530		
합계			19,622,105	12,731,180	32,353,270		7건	32,353,280		

주: 원 단위는 단수처리

자료: 재단법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환경부장관은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 한국사무소가 횡령한 연구용역비 5,532,400원을 환수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사무소의 용

역계약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